

입 법 예 고

「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2 월 6 일

예 천



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

1. 개 정 이 유

-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 직위를 변경하고자 함.

2. 개 정 내 용

가. 당연직 이사 직위 변경(안 제11조)

-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→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변경.

3. 개 정 조 례 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상황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마. 입법예고 결과 :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

5. 의견제출

이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, 이메일(arang21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.

- 항목별 의견 : 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 - 보내실 곳 : 예천군청 총무과 (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번지)
 - 전화 054-650-6837, 팩스 054-650-6089

○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 (<http://www.ycg.kr>) 초기화면의

“공고/고시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”을 “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임원 등) ① (생략)	제11조(임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예천교육지원청</u> 교육장, -----	③ <u>예천교육지원청</u> 교육지원과장, ----
-----	-----
-----.	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